

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6기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우리유치원 학부모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등록 장소: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유치원 원장실(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다. 등록 기간: 2023.3.9.(목)~3.14.(화)(9:00~17:00)

라. 구비 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각1통(원장실 비치 및 유치원 홈페이지→공지사항 란에 탑재), 사진 1매(3×4cm)

2. 위원 선거

가. 선거 일시: 2023.3.21.(화)09:00~16:00

나. 선거 장소: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유치원 원장실

다. 선출 인원: 학부모위원 3명

라. 선출 방법: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합니다.

마. 소견 발표: 선거전에 후보 1인 3분간 소견 발표가 있습니다.

바. 선거인 명부 열람: 2023.3.15.(수) ~ 3.17.(금)(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3. 3. 9.

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유치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